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48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 의 자 : 남인순 · 이수진 · 서미화
전진숙 · 조계원 · 박주민
최혁진 · 김 윤 · 이재정
전종덕 · 손 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결정(2017헌바127 결정)하였고, 입법시한이 만료되어 2021. 1. 1.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이후 현재 6년이 경과하였고 낙태죄가 비범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의약품 접근이 음성화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지연되는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

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함(2024. 9.).

한편, 임신중지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사용 중임.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및 제28조 삭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을 ““인공임신중지”란”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건강보험의 적용)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 <u>인공임신중절수술</u> ”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u>배출시키는 수술</u> 을 말한다. 8. ~ 12. (생략) 제12조(<u>인공임신중절</u>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u>인공임신중절의 예방</u>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u>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u>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인공임신중지</u> ”란 <u>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u> ----- ----- --- <u>배출시켜 임신을 중지하는 행위</u> 를-----. 8.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u>인공임신중지</u> 예방 등의 사업) ① ----- ----- ----- <u>인공임신중지</u> -----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u>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 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u>	<u>제14조의2(건강보험의 적용) ①</u> <u>「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임신중 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 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	---